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0 선고 2020가단510445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0. 7. 13.

판결 선고2020. 8. 1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716,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3. 30.까지는 연 6%, 2019. 3. 31.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9%,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72,000,000원을 한도로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항운서

별지